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3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개요	3
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운영	3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7
다. 입법 필요성 및 형식	9
2. 총칙 규정	13
가. 제명,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나. 정의 규정	19
다.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기본원칙	24

3.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기관	25
가.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 및 조정 기능의 수행	25
나.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려 필요	35
다.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신설 및 규제특례에 대한 관리·감독	37
4. 규제특례 운영기준 및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40
가. 규제특례 운영기준 및 절차 등	40
나. 규제신속확인	45
다. 실증특례	48
라. 임시허가	53
마. 규제특례에 부과하는 조건	58
바. 규제특례 관련 법령 정비	61
사. 적극행정 면책특례 및 포상	64
5. 보칙 및 벌칙 규정 등에 대한 고려 필요	6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1. 7.
3. 회 부 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규(新舊)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조정·결정하는 별도의 심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갈등·부처 이견으로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가 곤란한 사항의 조정, 범정부 차원의 과제에 대한 직접 특례 부여 등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다.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제도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 기준·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 라. 규제특례 승인 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 마.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IV. 검토의견

1. 개 요

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운영

□ 정부는 2018년 초에 신산업·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¹⁾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 혁신지원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제정·개정을 통해 총 4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였고,²⁾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ICT) 및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혁신금융(2019. 4.), 규제자유특구(2019. 4.), 스마트도시(2020. 2.), 연구개발특구(2020. 12.), 모빌리티(2023. 10.), 순환경제(2024. 1.) 분야로 확대되어, 현재는 총 8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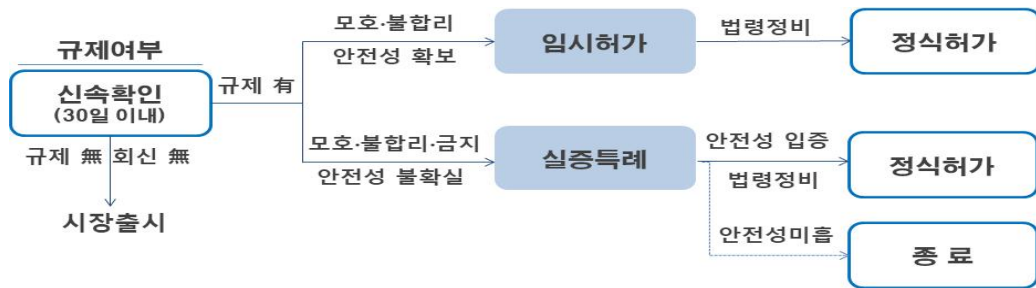
□ “규제샌드박스”는 법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일반적으로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

1)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1.19.

2)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샌드박스 소개

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허가’, ‘규제신속확인’도 추가해 운영하고 있음.³⁾

<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체계 >



(자료: 국무조정실)

- 규제샌드박스 수단 중 ‘규제신속확인’은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이 신속히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실증특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허가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해당 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또한, ‘임시허가’는 안전성 검증은 되었으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적합한 기준이 없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제품·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 법령 개정 전까지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함.

구분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목적		시험·검증	시장출시
요건	규제 존재여부 신속확인	①규제 모호, 법령 공백 ②규제 적용 불합리 ③금지·불허	①규제 모호, 법령 공백 ②규제 적용 불합리 ③안전성 확보

3)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샌드박스 소개

□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는 8개 개별법은 규제샌드박스의 주요 수단인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해 임시허가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규제샌드박스 분야 및 제도 운영>

법률명	주관기관	분야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	○	○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신기술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수단기반 시설서비스·기술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후에너지 환경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	○	○

-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8개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합계는 아래와 같음.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현황>

(2019. 1. ~ 2025. 12. 누적)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접수) 2,067건 → (회신) 1,965건	2,339건	119건

(자료: 국무조정실)

- 8개 개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인데, 이들은 개별법령에 따라 업무 위탁기관을 두고 각각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 운영 체계 >



(자료: 국무조정실)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 4장, 20조로 구성되는데, 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② 상위 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신설해 개별법에 따른 규제특례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렵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조정하게 하며, ③ 부처별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를 총괄 관리·감독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산업·신기술 규제의 기본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규제특례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5조(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제3장 신기술 서비스제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9조(규제특례의 운영기준) 제10조(규제특례의 신청 및 심의)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제12조(실증을 위한 특례) 제13조(임시허가) 제14조(임시허가의 취소) 제15조(규제특례에 부과하는 조건의 기준) 제16조(규제특례에 부과된 조건의 변경) 제17조(규제 특례 결과에 따른 법령의 정비) 제18조(조정신청) 제19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장 보 칙 제20조(위탁)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8개 분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 박스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통합 관리될 것으로 보임.



다. 입법 필요성 및 형식

□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일반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⁴⁾인데, 동 규정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시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개정이 지속되어 왔고,

2019년 4개 법률로 시작해 2026년 3월 현재 8개 법률에 규제샌드박스 운용 근거가 각각 마련되었음.

□ 이로 인해,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져 기업의 불편이 크고, 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 기제가 미흡해 규제특례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가 나타나고, 속도가 중요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4)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현 정부는 개별법에 따라 6개 부처가 8개 규제샌드박스를 각각 운영하는 등 규제샌드박스의 분절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통합관리를 국정과제⁵⁾로 확정하고, 8개 규제샌드박스의 현행 기능을 유지하되, 국무조정실이 규제샌드박스의 컨트롤타워로서 접수(단일창구)부터 심의, 사후관리, 규제개선까지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제정안은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을 입법화하려는 것으로,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규제특례 신청자 및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을 위해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며, 규제샌드박스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 8개 개별법에 따라 분야별 규제샌드박스가 각각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가 융합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 행정기관 간 의견조율의 필요성이 높으며, 개별법에 따른 제도 차이로 인해 사업자가 본인이 출시하는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정 전반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됨.

5) (국정과제 36-2) 성과 중심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 다만, 제정안 제4조⁶⁾는 규제특례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동 제정안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8개 개별법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현재 8개 개별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고,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한 개별법 통합 사례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⁷⁾이 있는데, 각종 국제대회 유치 때마다 제정되던 지원법의 양산 방지를 위해 2012년에 동법을 제정했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6)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이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규제특례신청자 또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규제특례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편, 입법 형식과 관련해,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샌드박스 관련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을 개정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포함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면, 규제 관련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따른 중앙규제특례위원회 및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를 5년간 총 201억 4,300만원(연평균 40억 2,900만원)으로 추계함.⁸⁾

□ 아래에서는 조문 별로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 동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p.1

2. 총칙 규정

가. 제명,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정안은 ① 신산업 활용 기업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신산업·신기술의 발전·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② 그 제명을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며, ③ 규제특례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규제특례신청자 또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제명, 안 제1조 및 제4조).

제 정 안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산업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의 특례를 종합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신산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이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규제특례신청자 또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규제특례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규제특례(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해 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향후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도 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일하려는 취지로 보임.

□ 제정안은 개별법마다 규제특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규제특례신청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각 분야 규제샌드박스의 통일적 운영을 통해 제도의 일관성 및 수요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첫째, 제정안의 제명은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규제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는 동 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특별법적 성격을 갖지만, 각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는 8개 개별법과 비교할 때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제정안 제4조⁹⁾와 같이 개별법보다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경우 개별 규제샌드박스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9)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하 생략)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각각 규정해 해당 분야의 특수성¹⁰⁾을 우선할 것인지 또는 단일법을 제정해 통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입법화한 제20대국회에서도 있었는데, 2018년 말 개별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입법화되면서, 현재까지 개별법 제정·개정을 통한 각 분야 특수성 반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제20대국회 규제샌드박스 도입 관련 주요 법률안 >

	법안명		주요내용
개 별 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민병두의원안, 2018. 3. 6.)	반 영	대상분야: 개별법 대상분야 (금융, 산업융합, ICT융합, 지역특구) 절차: 사업자 신청→ 주관 기관별 규제특례위 심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특례 부여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홍익표의원안, 2018. 3.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경민의원안, 2018. 3.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개정안 (김경수의원안, 2018. 3. 15.)		
단 일 법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김종석의원안, 2018. 5. 30.)	미 반 영 11)	대상분야: 신산업분야(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절차: 사업자 신청→국무총리 소속 규제특례위 심의→중앙 행정기관장이 규제특례 부여

1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혁신서비스 지정’제도만 운영하고 있음.

11) 2018년 말에 개별 분야별로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안들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면서 단일법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기존 8개 개별법보다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경우, 규제샌드박스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된 개별법 규정들은 규제 특례신청자에게 제정법보다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음.

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비자 피해의 광범위성 등을 고려해 ‘임시허가’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한 후 안전성이 검증되면 규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만 운용하고 있으므로,¹²⁾ 금융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안에 따른 임시허가 제도가 금융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

구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혁신법)
개념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4, §16) → 안전성 검증 후 법령 정비
심사 기구	혁신금융심사위 → 금융위원회(혁신법 §4①)
심사 기준	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특례 적용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금융시장 안정성 등 9가지 요건(혁신법 §13④)

12) 최초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제정 당시(2018년 12월)에도 「금융혁신법」은 금융분야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음.

□ 셋째, 기존 개별법과 동 제정안 간의 체계정합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 8개 개별법 중 해당 법률 우선 적용 규정을 두지 않은 사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건 뿐이므로, 동 제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법률 적용 순위와 관련해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8개 개별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

법률명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적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우선 적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동법 우선 적용. 단, 다른 법률에 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 적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제38조¹³⁾는 행정 입법활동 시에 법령등 상호 간에 상충되지 아니해야 함을 규정하여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13)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참고로, 규제샌드박스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다른 개별법에도 불구하고 동 제정안에 따른 규제특례를 모든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적용하려는 경우라면, 우선 적용 규정을 두지 않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외한 7개 개별법의 개정¹⁴⁾을 병행해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 개별 규제샌드박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동 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법화 하거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조정기능 등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규정을 두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¹⁵⁾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년)에 맞추어 종전에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개정해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새로 제정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2014년 개정)

15) <유사 입법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나. 정의규정

- 제정안은 ‘규제특례’, ‘규제특례 관계 법률’, ‘규제특례 주관기관’ 등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¹⁶⁾”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이란 신산업 분야에 활용되거나 신기술의 성과를 활용하는 서비스·제품을 말한다. 4.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5.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신속확인 :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의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나. 실증을 위한 특례 :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임시허가 :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

제 정 안

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규제특례 관계 법률”이란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7. “규제특례 주관기관”이란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라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하 “규제특례 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 “관계 행정기관”이란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 “개별규제특례위원회”란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정안은 ‘규제특례’ 등 이 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규제특례) 제정안은 ‘규제특례’를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가 이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확인’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

16) <유사 입법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해 주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신속확인’은 ‘규제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은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함으로써 법률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목적으로 이용됨.¹⁷⁾ 또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정의하는 것은 그 용어를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의미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정의된 용어는 다시 약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¹⁸⁾

그런데, 제정안은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를 정의한 후에 본칙에서 다시 해당 제도를 다른 방식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고, 이미 정의했던 ‘실증을 위한 특례’를 다시 ‘실증특례’로 약칭해 사용하고 있음.

이는 정의규정을 둔 취지와 입법경제 및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17) 「법제기준과 실제(2024)」, 국회 법제실, P.245

18) 「법령 입안 심사 기준(2023)」, 법제처, P.64

<정의규정과 본칙 조문 비교>

정의규정	정의규정 활용 본칙 조문
가. 신속확인 :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u>규제의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절차</u> 를 말한다.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u>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
나. 실증을 위한 특례 :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이 <u>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u>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u>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u> 을 말한다.	제12조(실증을 위한 특례)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u>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 (이하 생략)
다. 임시허가 :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u>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u>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u>허가등을 하는 것</u> 을 말한다.	제13조(임시허가)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이하 “임시허가신청”이라 한다) 할 수 있다.</u>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이하 생략)

□ (규제특례 관계 법률) 제정안은 ‘규제특례 관계 법률’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일반 국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8개 개별법을 정의규정에 직접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신산업·신기술 규제에의 기본원칙

- 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을 신산업·신기술 규제에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신산업·신기술 규제에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조례·규칙에 규정하거나 신산업·신기술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산업·신기술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정안은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원칙을 정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이나, 이 기본원칙은 이미 「행정규제기본법」 19)에 반영되어 있고, 동 제정안은 ‘규제’가 아닌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동 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19)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규제에의 원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3.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기관

가.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 및 조정 기능의 수행

□ 제정안은 ①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신설하고(안 제5조), ② 이 위원회가 규제특례 관련 갈등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1항), ③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주관기관 및 개별규제특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자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하며(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④ 조정 신청 방법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 정 안
제5조(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 신산업·신기술 또는 규제특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제 정 안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직접 접수받거나 제8조에 따른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로부터 배정받은 규제특례 신청 건에 대해 사업자 간 이해갈등, 규제부처와의 이견 등의 사유로 개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규제특례신청자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기존 규제특례와 관련해 조건의 변경이나 법령 정비가 필요하여, 규제특례신청자,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사항

3.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이하 “개별위원회”라 한다)의 규제특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규제특례신청자가 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업 발굴과 선정 등을 위원회가 주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직접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직접 특례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추진하도록 배정하거나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추진 및 관리·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기능 및 직접 규제특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 정 안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조정신청) ① 규제특례신청자·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통합센터의 장은 위원회 안전 상정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1. 사업자 간 갈등, 규제부처와의 이견 등의 사유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규제특례신청이 개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없는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 부여 여부 또는 제13조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여부에 대한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서 개별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그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3. 제15조에 따라 규제특례에 부과된 조건 또는 제16조에 따른 조건의 변경

제 정 안

신청에 대한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서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그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정비를 요청했으나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지 않거나,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경우

5. 규제특례를 부여함에 있어 「행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조건 등을 붙인 경우

6. 이 밖에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의 경우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정을 신청한 자 및 개별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개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조정결과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개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개별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4호에 대한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법령을 정비하고 매 분기별로 위원회에 법령 정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²⁰⁾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조정’ 기능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정의 세부절차와 관계 행정

20)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이 그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제정안은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 규제특례 관련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조정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며, 중앙규제특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정결과에 대해 개별규제특례위원회가 기한 내에 그 조정결과를 반영한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중앙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조율해 일관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규제특례 관련 갈등을 적정히 조정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첫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²¹⁾가 이미 규제 관련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그 위원을 대폭 증원(최대정원 25명 → 50명, 2026. 2.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²²⁾는 기존

21)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금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의 형태로 운영하며, 가능한 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둘째, 제정안 제6조제1항은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조정 대상’ 및 ‘요청자’를, 제정안 제18조제1항은 ‘조정 신청사유’ 및 ‘신청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 ‘요청자’와 ‘신청자’, ‘조정 대상’ 및 ‘조정 신청사유’는 유사한 내용이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임.

또한, 제정안 제6조제1항에서는 각 호별로 조정 요청자를 한정한 반면, 제정안 제18조제1항에서는 ‘규제특례신청자·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조문 간 규정 내용이 상충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한편, 제정안은 조정 신청사유 중 하나로 ‘규제특례를 부여함에 있어 「행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조건 등을 불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례 원칙 위반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 불분명하고, 비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임.

위원회의 조정 대상 및 요청자 (안 제6조제1항)	조정 신청사유 및 신청자 (안 제18조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함.	<u>규제특례신청자·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u>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1. <u>개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규제특례신청자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u>	1. 사업자 간 갈등, 규제부처와의 이견 등으로 <u>규제특례 신청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될 수 없는 경우</u>
3. <u>개별규제특례위원회(이하 “개별위원회”라 한다)의 규제특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규제특례신청자가 조정을 요청한 사항</u>	2. <u>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여부에 대한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그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u>
2. <u>기존 규제특례와 관련해 조건의 변경이나 법령 정비가 필요하여, 규제특례신청자,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사항</u>	3. <u>규제특례에 부과된 조건 또는 조건의 변경 신청에 대한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그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u> 5. <u>규제특례를 부여함에 있어 「행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조건 등을 붙인 경우</u> 4. <u>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정비를 요청했으나 요청 일자로부터 2개월 이상이 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지 않거나,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경우</u>
4. <u>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	6. <u>이 밖에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의 경우</u>

□ 셋째, 제정안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을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규제특례위원회와 규제특례 주관기관이 조정 및 조정대응을 위한 인적·행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각 기관의 대응 여건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넷째, 제정안 제18조제3항·제4항·제5항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가 기한 내에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을 따를 경우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재량 없이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의결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성이 있는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구 분	중앙규제특례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 (안 제18조제3항·제4항·제5항)
규제특례 부여 관련	-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심의·결정 - 단, <u>기한 내에 심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u>
법령정비 관련	-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이 1년 이내에 소관 법령 정비하고, 매 분기별로 위원회에 진행사항을 보고

한편, 제정안 제18조제1항²³⁾은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할 때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안을 따를 경우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재량 없이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개별 규제샌드박스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규제특례 주관기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다섯째, 제정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²⁴⁾은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권한으로서 조정 권한 외에 규제특례 부여 권한을 별도로 설정하고, 동 위원회가 직접 규제특례를 부여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제특례 부여 및 집행 기능을 중앙규제특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이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그 적정성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23) 제정안 제18조(조정신청) ① 규제특례신청자·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통합센터의 장은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24) 제정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② 위원회는 사업 발굴과 선정 등을 위원회가 주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직접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직접 특례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추진하도록 배정하거나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추진 및 관리·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7조 및 제20조²⁵⁾는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관 사무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조정실에는 국무총리 보좌 권한만 부여함.

그런데, 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규제특례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의 관여 없이 직접 사업자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 규제특례 부여 건 중 일부를 국무조정실이 추진·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어, 중앙규제특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이 사업자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처분²⁶⁾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중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각종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25)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26)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려 필요

□ 제정안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설치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이, 8개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개별규제특례위원회’로 정의하고, 제정안 제12조제7항²⁷⁾에서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자에게 실증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는 8개 개별법도 동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개별규제특례위원회 명칭 및 관련 조문>

법률	위원회 명칭	관련 조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27) 제정안 제12조(실증을 위한 특례) ⑦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신산업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조문상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을 구속하지만, 그 의사 결정을 국민에게 표시하는 권한(행정청으로서의 권한)²⁸⁾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행사할 수 있어, 제정안에 따른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제정안 제8조제2항제1호²⁹⁾는 규제특례 신청 건에 대해 개별 규제특례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제9조제3항³⁰⁾에서는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규제특례 주관기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라는 점에서 규제특례 신청 건의 소관 기관이 될 수 없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8)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9) 제정안 제8조(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② 통합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접수·처리 및 소관 개별위원회 지정

30) 제정안 제9조(규제특례의 운영기준) ③ 개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개별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다.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신설 및 규제특례에 대한 관리·감독

- ☐ 제정안은 규제특례 운영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① 국무총리는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른 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접수·처리 및 소관 개별위원회 지정 2.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규제특례 신청·승인 건에 대한 관리·감독 3. 규제특례와 관련한 법령정비 및 서비스·제품 상용화 등에 대한 관리·감독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별위원회로부터 조정을 요청받은 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관리 5.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위원회의 규제특례 심의 결과에 대한 조정 신청 접수 6.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직접 특례 부여 안건의 발굴·접수 7.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신산업 규제특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규제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는 8개 개별법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요건, 절차 및 후속 조치 등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본인이 출시하는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정 전반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제정안은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자의 규제특례 신청 창구³¹⁾를 통합하고 행정기관별로 각각 수행하고 있는 규제특례 관리·감독 기능을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가 일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31) 참고로, 산업융합 및 ICT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통합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자에 대한 통보
4.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7.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 7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8. 법 제10조의5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9.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0.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
11.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2.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3.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6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1조의3제8항(제11조의6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5. 제11조의5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이하 생략)

□ 다만, 제정안은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가 전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정안 제14조제1항³²⁾은 임시허가 취소나 시정명령 등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있을 수 있고, 국무조정실이 규제샌드박스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인적·행정적 여건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현행 8개 개별법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감독 업무를 규제특례 주관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³⁾

32) 제정안 제14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의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규제특례 운영기준 및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가. 규제특례 운영기준 및 절차 등

□ 제정안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절차와 관련해 ① 규제특례 심의·의결 기한, ② 동일·유사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기준 및 절차 간소화, ③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기산점, ④ 규제 정비 요청 방법, ⑤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규제특례 심의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제 정 안
제9조(규제특례의 운영기준) ①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라 규제특례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규제특례신청을 소관 개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개별위원회는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특례신청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었으나 기존에 부여받은 동일·유사 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에 대하여 추가로 규제특례신청을 하였을 경우, 추가 특례 신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개별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④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의 유효기간은 해당 사업의 실증이 개시된 날짜를 시점으로 기산한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의 특수성을

제 정 안

고려하여 해당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과 협의를 통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를 유효기간 시작일로 기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제특례 운영 원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규제특례의 신청 및 심의)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규제정비”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제정비 전이라도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규제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3.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5.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규제특례와의 형평성

③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은 접수된 과제 중에서 규제특례보다는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개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의 부여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기술의 혁신성, 신규성 및 이용자의 편익
2.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3.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유무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5.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 제정안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의 신청 및 심의·의결 과정과 관련해 개별규제특례위원회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아래 사항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제정안 제9조제1항³⁴⁾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특례 신청을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특례 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주체는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이므로, 심의·의결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 역시 개별규제특례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제5항³⁵⁾에서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규제특례 신청 안건을 상정하는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 기한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

34) 제정안 제9조(규제특례의 운영기준) ①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라 규제특례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규제특례신청을 소관 개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5)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⑤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①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라 한다)의 부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록 위임하고 있어,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 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그 처리 일정의 대략적인 사항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신청 ~ 개별규제특례위 안건 상정	개별규제특례위 안건 상정 ~ 심의·의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행정규제기본법」제19조의3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제정안 제9조제1항)

□ 둘째, 제정안 제9조제2항³⁶⁾은 동일·유사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규제특례 부여 건과 동일·유사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 모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한정된 시장 규모로 인해 기존 규제특례 사업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충분한 실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속 실증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셋째, 제정안 제9조제4항³⁷⁾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기산점’을 설정하고 있는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이 동 제정

36) 제정안 제9조(규제특례의 운영기준) ② 개별위원회는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특례신청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었으나 기존에 부여받은 동일·유사 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에 대하여 추가로 규제특례신청을 하였을 경우, 추가 특례 신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제정안 제9조(규제특례의 운영기준) ④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의 유효기간은 해당 사업의 실증이 개시된 날짜를 시점으로 기산한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과 협의를 통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를 유효기간 시작일로 기산한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기산점만 규정하는 것은 법률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설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넷째, 제정안 제10조제4항³⁸⁾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심의 시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13조제6항³⁹⁾에서 다시 임시허가 관련 심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양 조문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38) 제정안 제10조(규제특례의 신청 및 심의) ④ 개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의 부여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기술의 혁신성, 신규성 및 이용자의 편익
2.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3.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유무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5.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39) 제정안 제13조(임시허가) ⑥ 개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2. 해당 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나. 규제신속확인

- 제정안은 규제신속확인 제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 정 안

-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신청받은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통합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을 결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신속확인 제도는 신산업·신기술 등에 대한 허가 등 진입규제 유무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써,

사업자가 관련 규제 유무를 규제특례 주관기관에 문의하면, 규제특례 주관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규제특례 주관기관에 회신해야 하는데,

만약, 관계 행정기관이 ‘규제 없음’을 확인하거나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규제없음’으로 간주하여 해당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짐.

□ 규제샌드박스 관련 8개 개별법은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규제 신속확인’, ‘신속처리’, ‘규제확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함.

□ 제정안은 규제신속확인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자료 보완 기간을 회신기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정안 제12조 및 제13조⁴⁰⁾에

40) 제정안 제12조(실증을 위한 특례)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허가)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따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문 간 균형성을 고려해 규제신속확인의 경우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⁴¹⁾ 등은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4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실증특례

□ 제정안은 규제특례의 종류로서 실증특례의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실증을 위한 특례)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산업 또는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통합센터가 소관 개별위원회로 지정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통합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을 결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제 정 안

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소관 개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개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신산업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신산업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증특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허가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해당 서비스·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업자가 규제특례 주관기관에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주관기관에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함. 규제특례 주관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 해당 신청을 소관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신청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함.

일반적으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기본 2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하며, 8개 개별법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 특구 내에서 실증하도록 장소적 제약 요건을 추가하고 있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실증특례와 유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 관련 8개 개별법은 그 용어 사용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실증특례에 해당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실증특례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첫째, 제정안은 개별법⁴²⁾과 달리 실증특례의 ‘심의기준’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개별법과 제정안의 실증특례 규정내용 비교>

구 분	개별법	제정안
실증특례 신청	○	○
책임보험 등 배상방안	○	○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및 회신기한	○	○
개별규제특례위 심사	○	○
실증특례 심사기준	○	×
실증특례 유효기간	○	×
실증특례 부여	○	○
조건 부가 및 조건변경	○	○
손해배상책임	○	○
실증특례 취소	○	×
실증특례 관리·감독	○ (관계 행정기관 등)	○ (통합센터)

4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둘째, 제정안은 개별법과 달리 실증특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행정기본법」⁴³⁾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개별법⁴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실증특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실증특례 취소 규정은 없지만, 임시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 제14조⁴⁵⁾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 조문 간 균형성도 고려해야 할 것임.

43)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4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5) **제정안 제14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의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임시허가

- 제정안은 규제특례의 종류로서 임시허가의 절차와 허가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제 정 안
제13조(임시허가)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이하 “임시허가신청”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라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통합센터가 소관 개별위원회로 지정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통합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을 결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소관 개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제 정 안

장에게 소관 개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개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2.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⑦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원칙적으로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의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

제 정 안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시허가 제도는 안전성 검증은 되었으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이 없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서비스·제품 출시가 어려운 경우 법령 개정 전까지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사업자가 규제특례 주관기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주관기관에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함. 규제특례 주관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 해당 신청을 소관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신청에 대해 임시허가를 하게 됨. 또한, 임시허가 관계 행정기관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본 2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한데,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비자 피해의 광범위성 등을 고려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만 운영하고 있는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기본 2년 + 연장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금융 관련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됨. 한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안전성 등을 고려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제정안은 임시허가와 관련해 통일적 운영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개별법⁴⁶⁾과 달리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4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⑥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별법과 제정안의 임시허가 규정내용 비교>

구분	개별법	제정안
임시허가 신청	○	○
책임보험 등 배상방안	○	○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및 회신기한	○	○
개별규제특례위 심사	○	○
임시허가 심사기준	○	○
임시허가 유효기간	○	×
임시허가 부여	○	○
조건 부가 및 조건변경	○	○
손해배상책임	○	○
임시허가 취소	○	○
임시허가 관련 법령 정비	○	○

마. 규제특례에 부과하는 조건

- 제정안은 규제특례에 부과하는 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조건 부과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6조).

제 정 안
제15조(규제특례에 부과하는 조건의 기준)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특례를 부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2조제6항 또는 제13조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할 때는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개별위원회는 해당 조건으로 인한 사업 활동의 제한 정도와 조건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심의한다. ③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2조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부여에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사업의 안정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 2. 실증을 위한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 3. 실증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부과할 것 4.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5. 현행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제품에 적용되는 사항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안전성 검증 또는 실증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제16조(규제특례에 부과된 조건의 변경) ①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 부여 시에 부과된 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정이 변경되어, 부과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 규제특례 관련 사업을 착수하거나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실증을

제 정 안

위해 규제특례의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조건의 내용이 실증의 목적 달성과 무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나. 조건에 따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이 실증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유사한 조건에서 시행된 시범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통해 실증하고자 하는 안전성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확인되어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라. 조건을 변경하여 안전성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
- 마. 조건에 따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대 등의 사유로 규제특례 관련 사업의 착수 또는 지속이 사실상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에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한 개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정안 제12조제6항⁴⁷⁾ 및 제13조제6항⁴⁸⁾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시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조건을 붙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15조는 이 조건을 붙일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 부과 필요성을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개별규제특례

47) 제정안 제12조(실증을 위한 특례) ⑥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8) 제정안 제13조(임시허가) ⑥ 개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2. 해당 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위원회 심사 시에 조건 부과로 인한 사업 활동의 제약 정도와 조건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도록 하는 등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런데, 제정안 제15조제3항⁴⁹⁾은 조건 부과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면서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임시허가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 조문간 균형성과 체계정합성을 고려해, 임시허가 조건 부과 시의 고려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49) 제정안 제15조(규제특례에 부과하는 조건의 기준) ③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2조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부여에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사업의 안정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
2. 실증을 위한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
3. 실증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부과할 것
4.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5. 현행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제품에 적용되는 사항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안전성 검증 또는 실증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바. 규제특례 관련 법령 정비

- 제정안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법령을 관계 행정기관이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 정 안

- 제17조(규제 특례 결과에 따른 법령의 정비)** ①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의 기간 만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제13조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 만료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를 마쳐야 한다.
- ④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법령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령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제6조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⑤ 규제특례신청자·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규제특례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위원회에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정비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특례신청자·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 정비의 요청과 정비 계획 등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법령을 관계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특례신청자 및 규제특례를 받은 자도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중앙규제특례위원회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목표는 일시적인 규제 완화 또는 면제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제품이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므로, 동 제정안에서 법령 정비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미 「행정규제기본법」⁵⁰⁾에서 기존규제 정비 및 규제특례 관

50)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⑧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 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련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정 중 상세화 할 필요성이 있거나, 동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중심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또한, 제정안 제17조제3항은 ‘임시허가 기간 만료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제정안 제13조제10항⁵¹⁾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51) 제정안 제13조(임시허가)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원칙적으로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사. 적극행정 면책특례 및 포상

- 제정안은 ① 규제특례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② 규제특례 업무 추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규제특례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이하 “적극행정”이라 함)⁵²⁾를 장려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34조의3⁵³⁾ 및 「감사원 감

5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1항).

53)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⁵⁴⁾은 적극행정면책기준을 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적극행정면책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⁵⁵⁾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⁵⁶⁾ 역시 유사한 적극행정면책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54)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 제33조(적극행정면책)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 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5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한편, 「국가공무원법」⁵⁷⁾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⁵⁸⁾ 역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나 감사원·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⁵⁹⁾에서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규제특례 관련 업무 담당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 특례에 관한 사항을 동 제정안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제정안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특례는 현행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제정안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57)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58)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9) 「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중 현행 적극행정 면책 특례 외에 ①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법」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②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⁶⁰⁾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이 내용이 반영될 경우 규제샌드박스 업무담당 공무원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현행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적극행정면책기준에 따르면, 감사받는 자와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도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제정안 제19조제2항은 ‘고의’ 없음만을 추정하여 규제특례 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6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436호, 제2213918호)

현행	박상혁·정태호의원안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 <u>적극적</u> ----- ----- -----, 이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행정면책기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극행정면책 대상

- ① 공익을 위한 것일 것
- ②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단,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 처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제정안 제19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

참고로, 규제샌드박스 관련 개별법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⁶¹⁾ ‘고의 없음’을 추정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입법례는 없음.

□ 한편, 제정안 제19조제3항은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특례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은 적극행정 면책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로 분리해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임.

61)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보칙 및 벌칙 규정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제정안은 국무총리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및 벌칙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 정 안
제20조(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정안은 규제샌드박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나, 그 밖에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사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첫째, 제정안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원 등이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⁶²⁾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6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 제정안에 따른 중앙규제특례위원회는 사업자의 이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개별법 대부분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⁶³⁾을 두고 있음.

□ 둘째, 제정안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법률 간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형벌 및 과태료 규정을 둘 것인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현행 규제샌드박스 관련 대부분의 개별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에 처하고,⁶⁴⁾ 실제 행위자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는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둔 사례가 있으며,⁶⁵⁾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증특례·임시허가 취소

6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6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후에 제품·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⁶⁶⁾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별법에 따른 형벌, 양벌규정 및 과태료>

법률명	형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받은 자	양벌 규정	과태료
			① 책임보험 미가입 ② 실증특례/임시허가 취소 후 판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융합 촉진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단, 기간만료 후 계속운영 등은 1억원 이하 과태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	

물론, 제정안과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 그 위법행위의 양태에 따라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사기’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0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등의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나,⁶⁷⁾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외한 규제샌드박스 관련 개별법 모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받은 자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임.

또한, 과태료 처분의 경우에는 모든 개별법이 책임보험 미가입 및 규제 특례 취소 후 해당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범죄 처벌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위축방지 측면과 법률간 형평성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 과태료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113

67)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